

## 독일의 법정연금보험제도 관련 법의 제정 동향

### I. 서론

독일 사회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 수급자의 수와 대립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그 결과 독일 정부는 90년대 초 전반적인 독일 사회의 고령화와 이에 따라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연금보험의 많은 영역에서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곧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sup>2)</sup>

그러나 독일 정부는 2014년 또 한 번의 법정연금보험제도의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개정배경은, 지금까지 납부된 보험료는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세대 간의 정당성의 결함'(Gerechtigkeitslücke)을 종결 시키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세대 간의 정당성의 결함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2014년 법정연금보험제도가 개정된 것이다.<sup>3)</sup>

오랜 기간 동안 직업 활동을 수행한 사람들, 미래에 연금 수급자들을 부양할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더 이상 또는 단지 하루에 몇 시간만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연금 수급에서 더 나은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독일 정부는 '세대 간의 정당성'(Generationengerechtigkei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4)</sup>

한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은 세대 간의 연대성에 대한 희생을 야기시킨다. 법정노후보장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가이드 라인(Richtschnur)은 세대 간의 정당성에 관한 기본원리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노년층은 법정연금보험의 기능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젊은 세대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sup>5)</sup>

본 논문은 독일의 법정연금보험제도의 최근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금보

1) Bundesfinanzministerium, Die geförderte private Altersvorsorge, Monatsbericht (22.07.2013).

2) Rische, Die Zukunft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NZS 2013, 601 (601).

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Fragen und Antworten zum Rentenpaket, Standard: 19.08.2014, S. 1.

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

5) Bundesfinanzministerium, 앞의 주 1)의 월간보고서(22.07.2013).

장제도와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 법정연금보험제도의 개정배경(Ⅱ), 법정연금보험의 개정 내용(Ⅲ)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결론으로써 갈음하고자 한다(Ⅳ).

## Ⅱ. 법정연금보험제도의 개정 배경

법정연금보험은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세대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16세에 학교를 떠나 직업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들은 4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줄곧 쉬지 않고 노동을 하였다. 세대 간의 계약<sup>6)</sup>에 의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요건 하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그 당시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오늘날과 달리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했었다. 게다가 여성들은 많게 또는 적게 강제적으로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다. 결국 이 시대의 모든 근로자들에 의하여 오늘날의 독일 법정연금제도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었다.<sup>7)</sup>

법정연금보험제도의 개정은 무엇보다 1950

년대 근로자와 여성들이 독일 사회에 기여한 것을 존중하기 위함이며,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천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연금은 첫째(2014년) 약 9백50만명의 사람들이 법정연금보험의 수급자가 되며, 이들 중 약 20만명이 2014년에 63세가 된다.<sup>8)</sup> 이들은 1992년 이전에 아이들을 양육한 부모로서 일반적인 직업 활동(예, 젊은 여성의 아이 양육과 직장생활의 병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수행한 삶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법정연금보험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sup>9)</sup>

그 밖에 자유 보험료 납부 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약 4만 명의 피보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간 약 18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이 생계능력감소연금을 신청하였으며, 연간 약 140만 명의 사람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sup>10)</sup>

생계능력감소연금의 보험금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 없이 감소하였다. 평균지급금액은 2001년 초 676유로였으며, 2012년에는 607유로가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공동체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연금 수급의 보호

- 6) 세대 간 계약은 사회계약의 일종으로써, 현재 근로 세대가 일터를 떠난 노령의 은퇴자 세대를 부양하도록 하는 세대 간의 계약을 말한다.
- 7)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2.
- 8)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2-3.
- 9)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2.
- 1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2-3.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생업감소연금이 개정되었다.<sup>11)</sup>

### III. 법정연금보험제도의 개정 내용

독일 연방의회는 법정연금보험에 관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2014년 7월 1일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연정합의(Koalitionsvertrag)에 서명을 했다. 이는 무엇보다 세대 간의 정당성의 결함을 빠르게 종료시키기 위한 것이다.<sup>12)</sup> 새로운 연금개혁안(Rentenpaket)은 4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63세부터 지급되는 연금, 어머니연금, 개선된 생계능력감소연금 및 재활 예산(Reha-Budgets)이 속한다. 또한 연금계획안은 연금 추가 노동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모든 세대들을 위한 법정연금 시스템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sup>13)</sup>

#### 1. 63세부터 지급되는 공제 없는 연금 (Abschlagsfrei Rente)

법 개정에 의하여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예, 45년) 직장생활을 하였거나 또는 그 이상의 연금을 지급한 노동자들은 만 63세에 연금수급자로서 보장을 받는다. 63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은 조기 연금과 달리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공제되지 않는다.<sup>14)</sup>

#### 1) 63세로 규정한 이유

일반적인 연금 수급자(Regelaltersgrenze)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율의 감소로 인하여 수급자 연령의 단계적인 상승에 의하여 67세의 완료와 함께 연금 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이미 젊은 시절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여 몇 십 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자영업자, 보호노동(Pflegearbeit) 및 아이를 양육한 부모는 법정 연금보험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금 수급자의 연령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45년간 보험료를 지급하고 만 63세가 되면 공제 없는 연금 수급자로서 보장을 받는다. 이는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근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함이다.<sup>15)</sup>

1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6.

12) SPD-Parteivorstand, Fragen und Antworten - Das Neue Rentenpaket, SPD 29.1.2014, S. 1.

1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

1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3.

1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4; CDU, Das Rentenpaket der Bundesregierung: Fragen und Antworten, Stand: 30. januar 2014, S. 3.

## 2) 공제 없는 연금보험의 기능

4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만 63세에 공제 없는 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에 195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67세 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가입연령은 2015년으로 연기된다. 그러나 1953년 이후에 출생한 피보험자들은 63세부터 단계적으로 진입연령이 상승된다. 연장 간격은 매 출생년도 각 2개월의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1963년 이후에 태어난 피보험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제 없는 연금 수급의 시작은 만 65세부터 가능하다.<sup>16)</sup>

〈 표 〉 2014년 7월 1일부터 4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계산도<sup>17)</sup>

출생 연도	연금가입연령
1952년 및 그 이전	63년
1953년	63년 2개월
1954년	63년 4개월
1955년	63년 6개월
1956년	63년 8개월
1957년	63년 10개월
1958년	64년
1959년	64년 2개월
1960년	64년 4개월
1961년	64년 6개월
1962년	64년 8개월
1963년	64년 10개월
1964년 및 그 이후	65년

## 3)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연간 20만 명의 사람들이 63세의 연금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게 되며, 이 중 1/4은 여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먼저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서 만 63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제의 감수하에 연금 수급자가 되지만(일반적인 연금 수급자), 연금 개정의 의하여 적용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공제 없이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sup>18)</sup>

## 4) 법정연금보험의 적용대상

수십 년간의 생계활동(Erwerbsarbeit)은 법정연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연령제한 인상(Altersgrenzenanhebung)에도 불구하고 공제 없는 노령연금의 적용은 6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제한 인상에서 45년간 보험료를 지급한 피보험자들은 특혜를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이미 만 65세 이전에 전제요건을 충족한 피보험자들에게 해당되지만, 시간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특별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1952년까지 출생한 피보험자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들은 만 63세부터 공제 없는 연금진입이 가능하다.<sup>19)</sup>

16) BT-Drs. 18/909, S. 15.

17) CDU, 앞의 주 15)의 연금계획안, S. 2.

18)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4.

19) BT-Drs. 18/909, S. 14-15.

그 밖에 직장에서 책임보험료(Pflichtbeiträge), 자영업 및 10세까지 아이를 양육한 기간은 45년의 대기 기간에 산입된다. 이제부터 대기 기간은 실업수당에 포함된 기간을 산입하기 때문에 생계이력(Erwerbsbiografie)에서 단기간의 중단으로 인하여 특별히 받게 되는 중압감(Härten)은 없어진다. 동시에 실업수당이 과거에 연금법상 책임보험기간(Pflichtbeitragszeit)으로 평가되었는지, 계산기간(Anrechnungszeit)으로 평가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생계이력(Erwerbsbiografie)이 단기간 중단된 경우 일반적인 유상 보상(Entgeltersatzleistungen)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업단축지원금(Kurzarbeitergeld), 부분실업급여금(Teilzeitarbeitslosgeld), 직업훈련에서 이행 또는 지급불능 보상(Insolvenzgeld)에 해당된 기간 역시 산정된다. 이에 반해 수입 또는 빈곤에 의존한 사회보장기여금(Grundsicherungsleistungen) 내지 사회복지기여금(Fürsorgeleistung)은 포함되지 않는다.<sup>20)</sup>

## 2. 어머니연금(Mütterrente)

소위 어머니연금은 내용상 1992년 이전에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한 여성에게 지급되는 연

금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어머니와 아버지<sup>21)</sup>는 어린이 한 명당 보상 항목이 상승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구서독지역 월 28.14 유로의 연금가치, 구동독지역 월 25.74 유로의 연금가치에 상응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치는 구서독지역 월 28.61 유로 또는 구동독지역 월 26.39 유로에 해당된다. 매월 연금은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마다 다르게 계산된다. 또한, 이미 연금 수급자인 사람들은 신청서 없이 일괄적인 절차에 의하여 어머니연금의 수급자가 된다.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 어린이 양육시간의 산입은 적어도 연금신청절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sup>22)</sup>

### 1) 어머니연금의 보험료율

독일 연방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약 2십억 유로의 상승된 추가 자금으로 어머니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어머니연금의 보험료율(Beitragssatz)은 2018년까지 매우 낮은 수준인 18.9%로 안정적으로 측정되었으며,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법정보험료율 한계선(Beitragsobergrenze) 역시 준수된다.<sup>23)</sup>

20) BT-Drs. 18/909, S. 15.

21) 연금 수급자인 남성도 어린이 양육에 의하여 어머니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된다.

22)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2-13.

2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3.

## 2) 어머니연금의 비용과 산정

1992년 이전에 아이를 양육한 어머니들을 위한 비용은 2015년부터 연간 67억 유로(2014년은 약 절반)의 비용이 소요된다. 2014년에는 약 9백 5십만 명의 여성 또는 남성이 수급의 대상이 된다.<sup>24)</sup> 그러나 어머니연금은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하여 구서독지역 약 28 유로와 구동독지역 26유로가 공제가치(Bruttowerte)로 측정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인상된 금액(Erhöhungsbetrag)은 질병과 요양보험(Kranken- und Pflegeversicherung) 및 과세(예, 다른 연금구성)에 관한 보험법상의 규정에 따른다.<sup>25)</sup>

임금 및 보험료에 관한 연금법(Lohn- und beitragsbezogene Rentenrecht)의 전환에 의하여 구동독 주의 임금은 구서독에서 발전한 것과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 연금 산정의 경우 구동독의 평균 임금은 구서독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상금액(Entgeltpunkte)는 아직 구서독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보상금액은 모든 보험료 산정기간과 이에 상응한 어린이 양육기간의 가치에 따른다. 구동독의 연금가치의 동화는 연정합의(Koalitionsver-

trag)에 따라 연대협약의 연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연금가치는 91.5%의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다.<sup>26)</sup>

## 3) 이혼 시 어머니연금의 분할

특히, 공급조정(Versorgungsausgleich)에 의하여 부부 간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수입에 대한 연금의 청구는 동일하게 분배된다. 연금이 어머니연금에 의하여 상승된 경우 및 공급조정에서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금액의 차이가 후에 변경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다.

그러나 변경은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변경은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으로 상승하였어야 하고 최소 금액의 액수는 이혼이 2009년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행해졌어야 한다. 이는 곧 - 연금은 어린이 양육기간의 추가 계산에 의하여 인상되어야만 하는 - 절대적인 최소 금액에 관계되었는지, 아니면 - 어린이 양육기간의 추가 계산에 의하여 지금까지 공급조정청산(Versorgungsausgleichsbilanz)이 변경되어야만 하는 - 상대적인 최소금액에 관계된다.<sup>27)</sup>

2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3-14.

2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3.

2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4.

27)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4.

28)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5..

#### 4) 출산 후 일 년 이내 직장에 복귀한 여성

1년 동안 어린이 양육기간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어머니 연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이전 및 이후의 다른 어린이 양육기간처럼 일반적인 연금산정의 기준이 된다. 출산 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한 여성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발생된 변경된 어린이 양육기간이 적용된다. 보험료계산제한(Beitragsbemessungsgrenze)으로 인하여 이러한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 어머니연금의 금액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계산제한은 지불되어야만 하는 보험료의 최고치와 미래 연금 금액의 한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계산제한은 여성 내지 일반적인 근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부수적으로 근로에 기인한 연금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머니연금의 수급자가 된다. 이러한 원칙은 보편적으로 어린이 양육기간동안 출생 후 첫 3년간 다시 직장에 복직한 경우, 199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료계산제한의 계산규정이 다른 피보험자들에게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sup>29)</sup>

#### 3. 생계능력감소연금(Erwerb- sminderungsrente)의 확장

질병 내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또는 단지 제한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생계능력감소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생계능력감소연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생계능력감소연금의 경우, 당사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속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심사된다.<sup>29)</sup> 2012년 말 독일에는 약 168만 명의 사람들이 생계능력감소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sup>30)</sup>

##### 1) 생계능력감소연금의 공제 존속

생계능력감소연금에 대한 공제는 2001년 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도입 목적은 생계능력감소연금 수급자들에 의하여 청구될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에 대한 우호적인 대안으로써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들이 노령연금의 도달 이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완전히 또는 더 이상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생계능력감소연금은 임금대신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1)</sup>

29)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5.

3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6.

## 2) 생계능력감소연금의 개정 내용

생계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보호조치에 의하여 보장된다.

첫째, 생계능력감소연금의 산입기간은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2년 연장되었다. 이는 생계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균 수입에 의하여 2년을 더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보험금을 계산한 것이다. 또한, 생계능력감소연금의 연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계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이 만 62세 이전에 생계능력감소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 모든 피보험자들의 혜택을 받게 된다.<sup>32)</sup>

둘째, 산입기간의 산정 외에 생계능력감소연금의 금액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어느 방법에 의하여 산입기간에 임금이 기록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평균 임금의 산입기간은 전체 직장 생활에서부터 생계능력감소의 진입까지 평가되었다. 생계능력이 감소된 자들이 소득을 감소(예, 초과근무시간의 생략, 부분적인 시간 변경 등)시킨 경우 생계능력감소 시작 이전 마지막 4년은 산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 감소는 더 이상 생계능력감소연금 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리한 검사(Günstigerprüfung)'는 연금보험에 의하

여 보장된다.<sup>33)</sup>

## 4. 재활예산(Reha-Budget)의 인상

법정연금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들에게 의료상 및 직업상의 신체(또는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 법정연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업 능력이 위협을 받는 경우 지급된다. 독일 연금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소위, 재활예산). 그러나 재활예산의 지급제한은 법에 의하여 확정된 법정연금 보험료율(Beitragssatz)의 지급(Ausgabe)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sup>34)</sup>

### 1) 재활예산의 인상 목적

인구통계학적인 발전에 의하여 재활예산이 인상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는 재활서비스가 빈번히 필요한 45세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법정연금보험 자산이 모두 다 소진되었으며, 2012년에는 이들을 위한 재활비용이 1천2백만 유로를 넘었다. 독일 연금 보험자는 앞으로 자신의 피보험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학적인 발전에

3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7.

32)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5-16.

3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6.

3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7.

3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7-18.

맞추어야 한다.<sup>35)</sup>

## 2) 재활예산의 인상 범위

법정연금보험의 각 피보험자는 특정 보험법상의 전제요건(예, 최소보험기간 및 사적 의료요건) 하에 자신의 관할 연금보험기관에 의료상 또는 직업상 재활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sup>36)</sup> 따라서 재활예산은 지금까지 재활치료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용되었다. 2014년 연간 재활예산은 추가로 10억 유로가 인상된다. 이 추가예산은 2017년까지 20억 유로까지 인상된다. 그 후 인구통계학적인 발전으로 인한 재활치료 추가 예산은 출생율이 높은 세대들이 다시 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인하된다. 출생율이 높은 세대들은 매우 적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낮은 재활 서비스에 의하여 보장된다.<sup>37)</sup>

## IV. 결론 - 한국 법정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의 법정연금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세대 간의 정당성의 결함’을 종결시키고자 법정연금보험제도의 4가지 부분에서 개정을 단행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만 63세부

터 지급되는 연금, 어머니연금, 개선된 생계능력감소연금 및 재활예산(Reha-Budgets)의 인상에 관한 것이다.

만 63세부터 지급되는 공제 없는 연금은 4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줄곧 쉬지 않고 직업 활동을 시작한 세대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부터 4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만 63세에 공제 없는 연금 수급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로 인해 매년 20만 명의 사람들이 63세의 공제 없는 연금 수급자로서 보장을 받게 된다.

어머니연금은 1992년 이전에 출산하여 아이들을 양육한 여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어머니 연금으로 인하여 1992년 이전에 아이를 출산하였거나 양육한 여성 또는 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구서독지역 매월 약 28유로, 구동독지역 매월 약 26유로의 증가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연간 67억 유로의 비용이 지출된다. 또한, 2014년에는 약 9백 5십만 명의 여성 또는 남성이 연금 수급자로서 보호된다.

생계능력감소연금의 확장에 의하여 질병 내지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또는 단지 제한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생계능력감소연금의 산입기간은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2년 연장되었으며, 2012년 말 독일에는 약 168만 명의 사람들이 생계능력

3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8.

37)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앞의 주 3)의 답변서, S. 18.

감소로 인하여 법정 연금 수급자로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생계능력감소연금 수급자들은 조기 노령연금수급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연금보험제도의 개정에 의하여 의료상 및 직업상의 신체(내지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회복을 위한 재활예산이 인상되었다. 이에 대한 개정배경은 인구통계학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즉, 45세 이상의 사람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법정연금보험 자산을 모두 다 소진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2012년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은 1천 2백만 유로를 넘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인구통계학적인 발전에 의하여 재활치료의 추가예산은 2017년 이후 점점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직업 활동의 감소, 고령화 사회 및 저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연금 개정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나이 연장과 보험금을 인상하는 등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의 정당성의 결함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직업 활동을 한 세대들

에게 그들에게 맞는 적합한 보상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독일의 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또는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삶의 영위가 가능한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하여 공적 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적연금만으로 모든 연금 수급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미흡한 부분이다.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 보장은 연금 수급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독일과 한국의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총생산량 등의 차이가 양국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하여 형식적인 방안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노후를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 상 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원)

## 참고문헌

- Bundesfinanzministerium, Die geförderte private Altersvorsorge, Monatsbericht. 22.07.2013.  
 Rische, Herbert, Die Zukunft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NZS 201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Fragen und Antworten zum Rentenpaket, Standard: 19.08.2014.  
 CDU, Das Rentenpaket der Bundesregierung: Fragen und Antworten, Stand: 30. januar 2014.  
 SPD-Parteivorstand, Fragen und Antworten - Das Neue Rentenpaket, SPD 29.1.2014.